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이용권 지급근거, 자료제공 요청 및 업무 전담 기관 지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99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행정처분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안 제16조의2)

- 1) 농식품이용권 지급 대상 식품 이용 소외계층 범위를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3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된 가구 등으로 규정
- 2) 농식품이용권 자격 확인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범위로 규정
- 3) 농식품이용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고 심사하여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의 신청 및 지급절차를 규정

나. 농식품이용권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16조의3)

- 1)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
- 2) 전담기관 지정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 3) 전담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안 제16조의4)

- 1)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
- 2)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

- 1) 농식품이용권 지급 등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1) 34세 이하의 사람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식품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② 법 제23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에 대한 증명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관한 자료
6.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7.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 결정 통보를 한 경우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 신청, 지급 및 이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식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

명하는 서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지급 및 운영관리
 2.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리
 3. 농식품이용권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농식품이용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관리 및 금융사·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5. 농식품이용권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사업 홍보·성과관리
 6.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⑤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4(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신 설>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제16조의3제5항 및 제16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그 가중한 기간 또는 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은 6개월 또는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 3)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행정처분 사유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처분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기준	과징금 금액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4제2항제1호	지정 취소	해당 없음				

나.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	지정 취소	해당 없음				
다.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	업무 정지 2개월	3백만원	업무 정지 4개월	7백만원	업무 정지 6개월	1천만원
라.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제16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	업무 정지 2개월	3백만원	업무 정지 4개월	7백만원	업무 정지 6개월	1천만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4. 10. 22.> <중전의
별표에서 이동>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제20조의2제1항 관련)

1.~71. (생략)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 <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u> <u>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u> <u>1) 34세 이하의 사람</u> <u>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u> <u>나.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식품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u>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② 법 제23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에 대한 증명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관한 자료

6.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
료기관의 진단서

7.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수
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
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
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
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
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
청장”이라 한다)에게 농식품이
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
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자
료의 확인 등을 거쳐 농식품이

<신 설>

용권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 결정 통보를 한 경우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 신청, 지급 및 이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식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을 확보할 것

3.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
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
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
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지급 및 운영관
리

2.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관
리

3. 농식품이용권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농식품이용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처 관리 및 금융사
·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5. 농식품이용권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사업 홍보·성과관리

6.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 사업
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업무

⑤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
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

<신 설>

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4(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

제20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u>별표에</u>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②·③ (생략)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u><신설></u> (생략)	<u>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제20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 ----- -- <u>별표 2</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274